

주요 공사별 점검체크리스트

1. 건축공사

공종구분	공종별 점검항목		비고
1.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구조물의 재료 및 설치상태 비계 안전성 가설물 및 기계설비등 배치의 적정 여부 	
2. 굴착 및 발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상태 기계, 설비 등 배치의 적정 여부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시공 적정성 	
3. 지장 및 기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내력 시험방법 지장공법 과일항타 계획 	
4. 철근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바리 안전성 거푸집 안전성 	
	철근가공 조립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제작도 철근 이음 및 정착 철근 배근의 적정성 	
	콘크리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높이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품질 및 시공관리상태 시공이음의 방수 공사용 장비등 배치계획 PS 도입장치의 적정성 PS 도입작업의 안전성 	
5.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부재,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6. PC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장비 등의 적정 여부 조립용 크레인 주행로 지반상태 조립순서의 적정성 및 가조립 상태 접합부의 시공 및 마감상태 	
7. 조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체배치 계획의 적정성 쌓기모르터의 충전상태 쌓기방법의 적정성 	

2. 교량공사

분 류	표준공종	점 검 항 목	비 고
1. 기초공사	(1) 터파기	1)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등) 여부 점검	
	(2) 직접기초	2) 최종 굴착 종료 판정 여부 점검	
	(3) 말뚝기초	3)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점검1) 지내력 판정 시행 여부 점검	
	(4) 우물통기초		
2. 하부공사	(1) 기초공	1) 기초와의 일체성 여부 점검 2) 세굴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2) 콘크리트공	1) 동바리의 안전 여부 점검 2)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3) 1회 콘크리트 치기높이 안전 여부 점검 4) 두부 콘크리트 치기시 안전 여부 점검	
3. 상부공사	(1) 콘크리트공	1) 거푸집의 안전 여부 점검 2) 동바리 안전 여부 점검 3)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4) 콘크리트 치기순서 5) 전도나 낙교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6) 철재 가설물의 안전 여부 7) 각종 인양장치의 안전 여부 8) PS도입 장치의 적정 여부 9) PS도입 작업의 적정성	
	(2) 강구조공	1) 교각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2) 이음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3) 케이블의 안정성 검토 여부	
4. 부대공사	(1) 교 좌	1) 안정 및 적정 여부	
	(2) 신축이음		
	(3) 방 수		
	(4) 배 수		

3. 상하수도 공사

공종구분	공종별 점검 항목	비고
1. 터파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탈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흙막이공의 주변여건(흙막이공) 가설공법의 적정성 및 가설재의 설치상태(흙막이공) 계측관리 상태(흙막이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흙막이공 및 연약지반 처리시) 	
2. 관부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관 및 변류의 규격과 재질 터파기 바닥 상태 연약지반의 처리상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되메움 토양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상부지반의 침하방지대책(관추진공) 하천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3. 관접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접합방법 및 시공상태 현장시험방법 및 결과 정류기 및 양극의 규격, 설치상태(전기방식공) 절연부의 Bonding 상태(전기방식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4. 터널공사

분류	표준공종	점검 항목	비고
1. 공통사항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조직의 운영상태 2) 교통 및 통행안전시설 관리 상태 3) 화약관리 자격소지자 확인 4) 전기관련 설비 상태(플랜트 포함) 5) 주민 홍보시설 상태점검	
	(2) 환경관리	1) 환기상태 2) 조명상태 3) 폐수 및 폐기물 처리상태 4) 통로상태	
2. 공사장 주변 안전공	(1) 근접구조물 보호공	1) 근접구조물 보호공 상태	
	(2) 양육,가축시설보호공	1) 소음저감대책 2) 진동저감대책 3) 발파공법의 적정성	
	(3) 지하매설물 보호공	1) 지하매설물 보호공 상태	
	(4) 지하굴착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공	1)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 상태	
	(5)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1)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상태	
3. 가시설공	(1) 토류 구조물공	1) 토류구조물의 설치상태 및 변위 여부 2) 계측관리 상태 3) 갱구보강 상태 및 변위 여부 4) H-pile 수직도 상태 5) H-pile 근입 상태 6) 띠장 및 버팀보 상태 7) 갱구 보강 상태	
4. 굴착공	(1) 굴착공	1) 발파 굴착 2) 여굴발생 조치 상태 3) 뜯돌등 제거 상태 4) 용출수 및 배수처리 상태	

5. 항만공사

(1) 계류시설(중력식안벽, 잔교식 안벽, 돌핀)

공종구분	점검항목	비고
1. 기초공 (기초준설,치환공)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2. 사석공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3. 제작 및 거치공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4. 항타공	1) 말뚝(파일)의 적치상태 2)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3) 항타계획 4) 말뚝선단 및 두부보강 5) 말뚝의 이음 6) 소음 및 진동측정과 대책 7) 말뚝의 항타 기록 8) 시공의 허용오차	
5. 동바리공	1) 조위 및 파랑 적응대책 2) 말뚝손상 방지대책 3) 구조검토의 적정성 4) 콘크리트 치기전의 점검여부	

공종구분	점검항목	비고
6. 콘크리트공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7. 속채움 및 뒷채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8. 매립공	1) 매립방법의 타당성 2) 펌프준설토 이용시 점검사항 3) 해양오염 방지대책 4) 침하계측관리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9. 부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2) 외곽시설(방파제, 갑문, 호안)

공종구분	점검항목	비고
1. 기초공 (기초준설, 치환공)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2. 사석공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3. 제작 및 거치공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4. 콘크리트공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5. 속채움 및 뒷채움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6. 가물막이공	1) 시공계획 2) 구조적 안전성 3) 파이프링 발생 유무	
7. 부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6. 댐공사

분류	표준공종	점검항목	비고
1. 공통사항	(1)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성	
	(2) 우수전환시설	1) 홍수기시 비상방류대책 2) 상·하류지역 비상연락체계 3) 월류시 피해저감 및 복구대책 4) 가물막이 및 가배수 터널	
	(3) 기초굴착 및 기초처리	1) 석산, 공사용 도로 및 이설도로 2) 기초굴착상태 3) 기초처리상태 4) 파쇄대·용출수 등의 처리 5) 양안부 굴착사면	
2. 필댐	(1) 댐 축조(초기단계)	1) 재료전정의 적정성 2) 다짐관리의 적정성 3) 품질관리의 적정성 4) 취수구, 방수로의 집합상태 5) 계측기 매설	
	(2) 댐 축조(중간단계)	1) 수평시공과 품질관리 2) 계측계기 설치	
	(3) 여수로	1) 대절토 사면 2) 기초굴착 3) 콘크리트 구조물 4) 수문설치의 적정성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	
3. 콘크리트댐	(4) 담수직후	1) 우수전환시설의 폐쇄 2) 누수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계측기 작동 상태	
	(1) 댐 축조 (하상기초 완료후)	1) 배수처리와 우천시 대책 2) 비계의 안전성 3) 거푸집의 안전성 4) 동바리의 안전성 5) 치기순서, 치기높이 및 치기구획의 적합성 6)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7) 양생 8) 지수설계에 대한 적정성 및 시공상태	
3. 콘크리트댐	(2) 댐 축조(중간단계)	1) 콘크리트 치기과정의 적합성 2) 품질관리 3) 공사용 시설 안전관리 4) 콘크리트 치기용 장비운영 및 관리	
	(3) 여수로	1) 콘크리트 구조물 치기상태 2) 수문설치공사의 적정성	
	(4) 담수직전	1) 우수전환시설 폐쇄 2) 댐체 시공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매설계기 관리 상태	

7. 하천공사

(1) 수로

공종구분	공종별 점검 항목		비고
1. 가시설공	(1) 흙막이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흙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제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가물막이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제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1) 기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철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4) 콘크리트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되메우기 및 호안공	되메우기 및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제방

공종구분	공종별 점검 항목		비고
1. 하천 바닥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사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1) 기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철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4) 콘크리트치기, 양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타설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때붙임 시공상태 호안공 시공상태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파이핑 여부 점검 	

(3) 하구둑

공종구분	공종별 점검항목	비고
1. 배수갑문 가물막이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배수갑문 기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 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배수갑문 콘크리트공	<p>(1)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p>(2) 철근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p>(3) 콘크리트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4. 제체연약 지반 보강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5. 제체사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체절방법, 순서의 준수여부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6. 제체성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필터공 시공상태 피복공 시공상태 계측관리 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1. 가설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NO.1 점검일자 : _____		결 재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가설비계	(1) 강관비계	◦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에 합당한 것인가				
		◦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은 없는가				
		◦ 각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밀둥잡이를 설치하였는가				
		◦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1.5m이하로 하였는가				
		◦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띠장 및 장선은 1.5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로 하였는가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분의 강관으로 묶어 세웠는가				
		◦ 구조체와 수직·수평으로 5m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기둥간격 10m 마다 45°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하였으며, 가새에 접속되지 않은 기둥은 없는가				
		◦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 등의 접합은 전용철물(격쇠, 보울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 지주나 띠장의 이음은 동일 직선 상에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0m 이내로 하였는가				
		◦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하였는가				
◦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은 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 긴결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NO. 2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가설비계	(2) 틀비계	◦ 부재에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불량품은 없는가	
		◦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였는가	
		◦ 주틀간의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과 5층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 구조체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밑받침을 설치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받침을 설치 수평·수직을 유지시켰는가	
		◦ 각 부재, 프레임 등의 연결핀, 집합철물 또는 고정핀은 완전히 조였는가	
	(3) 달비계	◦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였는가	
		◦ 띠장 방향으로 길이가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하였는가	
		◦ 다음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는가 - 지주의 지지물이나 각 부재의 이음 부분이 풀려 있지 않은가 - 지주와 수평강관 그리고 가새의 이음 부분에 변형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린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 결속선은 #8 또는 #10 철선으로서 새것을 사용하였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않는가 -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는 것 - 현저한 변형이나 부식된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 길이가 제조 당시 보다 5%이상 늘어난 것 - 고리의 단면 직경이 10%이상 감소된 것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율은 10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후크의 안전율은 5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였는가			
◦ 와이어로프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 앵커 또는 권상기에 2개소 이상 묶어 결속하였는가			

NO. 3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가설비계	(4) 이동식 비계	◦ 비계에 사용된 강관은 KS규격에 합당하고,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가	
		◦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설치하였는가	
		◦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였는가	
		◦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하였는가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2. 가설통로	(1) 가설경사로	◦ 비탈면의 경사각은 30°이내로 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목재는 미송·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과, 철재는 6mm이상의 철판을 바닥판으로 사용하였는가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였는가	
	(2) 가설계단	◦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2cm, 너비 25~30cm를 표준으로 설치하였는가	
		◦ 계단의 폭을 옥내에서 75cm 이상, 옥외에서는 60cm 이상으로 하였는가	
		◦ 지주 및 난간기둥 간격은 120~150cm로 적당하며 적절한 조명설비를 갖추었는가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m ²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였는가	
	(3) 작업발판	◦ 발판 1개는 폭 40cm 이상, 두께 3.5cm 이상, 길이 3.6m 이하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최대적재하중(400kg 이하), 위험경고 및 지지판을 부착하였는가	
		◦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간격 3cm 이하로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하였는가	
◦ 이음부는 발판간에 20cm이상 겹치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고정하였는가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인가			

NO. 4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낙하물 방지	(1) 방호철망	◦ 철망호청 #13 내지 #16의 것, 또는 아연 도금한 철선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15cm 이상 겹쳐 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	
	(2) 방호시트	◦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kg·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는가	
		◦ 방호시트 돌레 및 모서리를 잡아매는 멩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하였는가	
		◦ 단열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3) 방호선반	◦ 구조체와 45cm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하였는가	
		◦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정도로 하였는가	
		◦ 선반 넓은 두께 1.5cm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정기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가 설 계획	◦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 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 여부		
2.비계 및 발판	◦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 외부비계의 설치 상태 (지주·띠장간격)		
	◦ 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		
	◦ 발판의 설치 상태 (재질,틈,고정)		
	◦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3.낙하물 방지	◦ 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 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 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 각도		
	◦ 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		

2. 콘크리트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NO.1 점검일자 : _____

결				
재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거푸집	(1) 일반사항	◦ 여러번 사용으로 인하여 흠집이 많거나 접촉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금이 나있는 것은 없는가	
		◦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가	
		◦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려 있는 것을 교정한 후 사용하는가	
		◦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사포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Form oil)를 얇게 칠해 두었는가	
		◦ 강재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를 칠해 두었는가	
		◦ 광판, 목재,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고 녹 또는 부식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2) 기초 거푸집	◦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고 있는가 기초→기둥→벽체→보→바닥	
		◦ 흔들림 막이 턴버클,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거푸집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여유있게 되어 있는가	
		◦ 거푸집전 및 조립 상태가 정확한가	
		◦ 관통구멍, 앵커보울트, 차출근의 위치, 수량, 지름 등은 정확한가	
		◦ 독립기초의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떠오르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가	
	◦ 밀창 콘크리트면의 기초 먹줄의 치수와 위치는 정확하며 도면과 일치하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거 푸 집	(3) 기둥, 벽의 거푸집	◦ 거푸집 하부의 위치는 정확한가		
		◦ 기둥 및 벽거푸집은 추를 내렸을 때 수직인가		
		◦ 건물의 요철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 하부에는 청소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는 완전히 단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 개구부의 위치와 치수 및 상자 넣기(나무토막) 등의 설치 위치는 정확한가		
	(4) 보, 슬래브의 거푸집	◦ 거푸집의 치수는 정확한가		
		◦ 모서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 슬래브의 중앙부는 처짐에 대한 약간 솟음을 두었는가		
		◦ 기계설비 및 천정설치용 고정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2. 철 근 공	(1) 가공	◦ 철근은 철근구조도에 의하여 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였는가		
		◦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철근과 다른 강도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였는가(부득이 가열가공을 실시할 경우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는가)		
		◦ 유해한 휨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코일 모양의 철근은 직선기를 사용하는가		
		◦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가공형상, 치수로 가공하되 바깥쪽 치수를 따라서 가공하였는가		
		◦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구부릴 경우 용접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렸는가		
		◦ 한번 가공한 철근을 재 가공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		
	(2) 조립	◦ 들뜬 녹 등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였는가		
		◦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했는가		
		◦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했는가		
		◦ 철근의 교점을 지름 9mm 이상의 풀립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철 근 공	(2) 조립	◦ 벽이나 슬래브의 개구부에는 보강철근을 사용하였는가		
		◦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배치하였는가		
		◦ 철근의 조립 후 다음 사항을 규정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철근의 개수와 직경 - 이음의 위치 -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 상태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였는가		
	(3) 정착·이음	◦ 인장 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보의 중앙부근 이음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이음 및 정착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은 것은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은 것은 지름의 25배로 하며, 이음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는 그 평균 지름으로 하였는가		
		◦ 철근의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여 잇갈려 있도록 하였는가		
		◦ 철근의 정착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 기둥의 주근은 기초 - 보의 주근은 기둥 -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 - 직교하는 끝부분의 보 밑에 기둥이 없을 경우는 보 상호간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 - 벽 철근은 기둥, 보, 기초 또는 바닥판 - 바닥판의 철근은 보 또는 벽체		
3. 콘 크 리 트	(1) 타설	◦ 작업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는 보수하였는가		
		◦ 작업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 타설 중 배근이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타설 속도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가		
		◦ 콘크리트 타설 한계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거푸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순서 및 일일 타설 높이를 정하였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3. 콘 크 리 트	(2) 이어치기	◦ 보, 슬래브의 이어치기는 스펜(Span)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였는가	
		◦ 캔틸레버보나 슬래브는 절대로 이어치지 않도록 하였는가	
		◦ 보의 어어치기는 수평으로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슬래브의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때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 하였는가	
		◦ 벽은 개구부 등의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막기와 떼어내기가 편리한 곳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음 하였는가	
		◦ 아치(Arch)의 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으로 하였는가	
		◦ 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할 때 레이턴스를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물을 제거하였는가	
		◦ 이어치기 할 곳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였는가	
	(3) 다짐	◦ 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였는가	
		◦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를 밑의 층 속에 약 10cm 정도 삽입하였는가	
		◦ 막대형 진동기는 수직 방향으로 넣고,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였는가	
		◦ 막대형 진동기(꽃이 진동기) 및 표면 진동기 등은 각기 특성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가	
◦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뿔을 때에는 천천히 뿔아 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였는가			
(4) 양생	◦ 타설후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조강일 경우 3일)하도록 하였는가		
	◦ 양생기간 온도는 항상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 콘크리트 타설후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등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였는가		
	◦ 강우, 폭설 등의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하였는가		
	◦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대책을강구 하였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거 푸 집 지 보 공	(1) 일반사항	◦ 지보공의 위치와 간격, 부재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밀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부동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 경사진 바닥면에 세울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횡목의 중앙에 설치하는 등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높이 조절용 받침목, 철판 등은 이탈되지 않았는가	
		◦ 이동용 틀비계를 지보공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활차가 고정되어 있는가	
		◦ 지보공 및 보를 지지하는 주요 부분은 각각 규격품 또는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존치 기간은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는가	
		(2) 강관지주	◦ 단관 및 잭 베이스(Jack Base)의 변형, 파손 등은 없는가
	◦ 각부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켰는가		
	◦ 강관 지주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이음을 2방향으로 설치하고 견고한 것에 고정하였는가		
	◦ 수평연결, 기초지주의 부재는 단관을 이용하여 지주에 클램프(Clamp)로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 두부의 잭 베이스는 멍에에 확실히 고정하였는가		
	(3) 파이프 지주	◦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강관지주를 사용할 때 접속부의 나사는 마모되어 있지 않는가			
◦ 파이프 받침을 3분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 높이 2m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파이프 받침의 두부 및 각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거 푸 집 지 보 공	(3) 파이프 지주	◦ 파이프 받침은 조립전에 상태의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는가			
		◦ 파이프 받침의 꽃기핀은 전용의 철물을 사용하였는가			
		◦ 조립시 수평 연결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 스펀이 긴 건물의 경우는 스펀의 양단부 및 중앙부 의 지주를 먼저 세워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는가			
	(4) 강관틀 지주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는가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 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 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5) 목재	◦ 보 또는 명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지주 상단에 강 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명에에 고정시켰는가			
		◦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분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명에에 고정시키도록 하였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거푸집공사		◦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		
		◦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 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		
		◦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 박리제 도포 상태		
		◦ 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 방지 조치		
		◦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2.철근공사		◦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
◦ 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 철근의 배근간격				
◦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 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간격				
◦ 신축이음 부위,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				
3.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 Slump Test의 유무		
		◦ 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 콘크리트 다짐 상태		
		◦ 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		
		◦ 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		
◦ 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두께				
4.거푸집 지보공		◦ 콘크리트의 강도조사		
		◦ 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		
		◦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 상태		
		◦ 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		
		◦ 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 착상태		
		◦ 지보공의 침하방지 조치		
		◦ 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철물 사용 여부		

3. 강구조물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NO.1		결				
점검대상 : _____		재				
NO.1		재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건립 작업	(2) 인양작업	◦ 인양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리는가				
		◦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였는가				
		◦ 매어 달 철판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글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 브래킷(Bracket) 아래 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보호용 폼재를 넣어 인양하도록 하였는가				
		◦ 기둥은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리도록 하였는가				
		◦ 기둥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 할 때는 새클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였는가				
		◦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하였는가				
		◦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는가					
	(1) 일반사항	◦ 데릭을 설치하는 철골부분은 리벳조임을 하거나 보울트조임을 완전히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였는가				
		◦ 지붕 트러스등 구성재를 달아 올릴 때는 반대하중으로 변형되기 쉬운 것을 보강하거나, 지주를 세워 대고 조립하는가				
		◦ 앵커보울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이도록 하였는가				
		◦ 기둥 밑판은 모르타르 채움공법을 사용할 때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기둥 건립시 가조립 보울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가				
◦ 보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줄 또는 버팀대로 보호하였는가						
◦ 기둥밑둥 부분이 편일 때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철거하는가						
◦ 분할핀은 사전에 철골에 연결하였는가						
◦ 브래킷(Bracket),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등은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부착하였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건립 작업	(2) 인양작업	◦ 인양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리는가	
		◦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였는가	
		◦ 매어 달 철판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글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 브래킷(Bracket) 아래 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보호용 폼재를 넣어 인양하도록 하였는가	
		◦ 기둥은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리도록 하였는가	
		◦ 기둥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 할 때는 새클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였는가	
		◦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하였는가	
		◦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는가		
	(1) 전기 용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작업중단시 스위치는 켜는가			
2. 접합	(1) 용접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용접 작업장 부근에 가연물이나 인화물은 없는가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 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접합	(1) 용접	①	◦ 작업장 가까이는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여 놓았는가	
		◦ 인화물을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가		
		◦ 가스용기 취급은 조심해서 하며, 팽개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압력계, 꼭지쇠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나서 작업하는가		
		◦ 작업전에 취관,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환기상태가 나쁜 좁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에 주의하도록 하는가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2) 보울트	◦ 용기는 빈용기와 충전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처마 높이가 9m를 초과하고 스패이 13m를 초과하는 강구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보울트 구멍 지름은 보울트의 공칭축 지름에 0.5mm 더한 것 이하로 하였는가		
		◦ 보울트로 체결하는 판의 총두께는 지름의 5배이하로 하였는가		
		◦ 보울트와 너트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2중 너트, 스텝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3.도장작업	◦ 현장도장전에 공장도장을 한 강재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 칠 작업전 바탕 만들기 상태는 양호한가	
◦ 칠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칠을 하지는 않았는가				
◦ 작업중 손상된 도막에 대한 보수상태는 양호한가				

NO. 4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3.도장작업	◦ 바탕 만들기 완료된 후 신속히 칠 작업이 실시되는가		
	◦ 먼저 부재의 운반, 조립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같은 도료로 도장을 하는가		
	◦ 전체적으로 균일한 도막질이 이루어졌는가		
	◦ 5℃이하, 상대습도 80%이상일 때 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칠 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수분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건립작업	◦ 공사계획의 적합성 여부 - 부재의 형상 - 철골의 자립 안정도 - 보울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 가설부재 및 부품 - 건립용 장비 및 건립작업성 - 건립순서 및 현장 접합의 시기		
	◦ 조립 순서도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양중 계획의 적정성		
	◦ 부재의 수직 수평도		
	◦ 부재의 야적방법		
	◦ PC공사의 코킹재질 및 시공상태		
	◦ 고정철물 부식의 방지조치		
	◦ 철골 공사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상태		
	◦ 가조립 상태의 방치 여부		
	◦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상태		
2.접합 및 도장작업	◦ 용접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 상태		
	◦ 도장작업의 적정성		
	◦ 손상된 도막의 보수 상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굴 착 공 사	(3) 발파굴착	◦ 점화위치는 폭파의 정도에 따라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하였는가		
		◦ 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 외는 자물쇠는 채우거나 떼어놓도록 하였는가		
		◦ 발파기와 모선과의 연결은 점화직전에 하도록 하는가		
		◦ 전기발파에서 발파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떼어 내고 재점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이상 경과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 터널 내에서는 잔류 가스 및 지반의 붕괴 위험이 없어진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 불발공에 대한 점검 및 처리 규정은 설정되어 있는가		
		◦ 불발공 폭파를 위한 천공은 평행으로 천공하고 그 간격은 기계굴착시 60cm 이상, 인력 굴착시 30cm 이상인가		
4. 흙막이		◦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투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단 상태는 적절한가		
		◦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 현장 내외의 집수통 설치, 배수도랑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는가		
		◦ 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위험한 곳은 없는가		
		◦ 버팀목 및 띠장은 보울트, 썸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 버팀목 및 흙막이판들의 사이에 틈은 없는가		
		◦ 부재의 연결부분은 확실하게 이음이 되어 있는가		
		◦ 중간지주가 있을 때 이것이 띠장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가		
		◦ 흙막이재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부식된 것은 없는가		
		◦ 흙막이판 뒷면에 틈이 없고 누수나 토사의 유출이 없도록 하였는가		
		◦ 부재설치가 지연되거나 동바리에 근접한 상단에 재료를 쌓아 두지 않았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굴착공사		◦ 굴착예정지의 실지조사 여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암거, 지하매설물의 상태 - 주변시설물, 전주, 가공선의 상태 - 유동성 물질의 상태		
		◦ 다음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점검·정비 - 흙막이 공사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높이 및 구배의 준수여부		
		◦ 발파굴착시 화약의 보관 상태		
		◦ 발파후 처리 상태		
		◦ 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		
		◦ 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		
2. 흙막이공사		◦ 조립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 시공시 부재의 품질, 토질 및 수압 등의 고려 여부		
		◦ 보일링 또는 히이빙의 발생 또는 위험 여부		
		◦ 부재연결 부분의 상태		
		◦ 누수 및 토사의 유출여부		
		◦ 버팀목 및 흙막이판의 조립상태		
		◦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5. 성토 및 절토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NO.1 점검일자 : _____

결				
재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흙쌓기공사	◦ 사전에 나무뿌리 등의 유해한 잡물을 제거하였는가		
	◦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성토중에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는가		
	◦ 변상상태 등의 관찰(함몰, 균열등)을 수시로 하는가		
	◦ 비탈면의 하부 및 상부, 작은 단부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비탈면 상부에 물의 침투 방지조치(시트 등의 활용, 가설배수로 설치, 조기식재 등)를 하였는가		
	◦ 비탈면 상부에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 또한 중장비의 주행을 삼가하도록 하였는가		
2. 흙깎기공사	◦ 상부 비탈면에 내리는 우수나 용수가 비탈면을 흐르지 않도록 비탈면 상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비탈면이 높은 경우 보통 5~10m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도를 하도록 하였는가		
	◦ 소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탈면 하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 하향 배수의 유도를 위하여 비탈면을 따라 종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우수후에는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해 균열 등 비탈면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흙쌓기 공사	◦ 원지반의 유해물 제거여부		
	◦ 흙쌓기 부위의 다짐상태		
	◦ 배수시설 설치상태		
	◦ 흙쌓기면의 함수비		
	◦ 흙쌓기 재료의 적정성		
2. 흙깎기 공사	◦ 시공전·후 현장상태의 기록 보관유무		
	◦ 지질조사 및 지하 매설물의 검토 확인여부		
	◦ 지하 매설물의 보호대책 수립여부		
	◦ 비탈면 배수시설의 적정성		
	◦ 비탈면 구배의 안전성		

6. 교통안전관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NO.1 점검일자 : _____

결				
재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도로의관리	◦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출입방지시설을 포함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였는가		
	◦ 차선의 차단,우회 등의 통해경로의 변경시 임시 노면 표시를 하였는가		
	◦ 간판, 표식 등은 소정의 장소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항상 정비·점검을 하는가		
	◦ 야간조명, 보안등, 유도등 등은 전구가 끊어졌는가를 점검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는가		
2. 간판,표식의 정비	◦ 공사간판, 우회로 안내판, 등 각종 표지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하였는가		
	◦ 안내표식, 협력요청 간판 등은 조종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 표식판, 표식등 간판류는 표시내용이 야간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3. 공사현장의 출입구	◦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면한 보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단차, 빈틈, 미끄러짐 등이 없는 구조로 하였는가		
	◦ 출입구에는 필요에 따라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였는가		
4. 기타	◦ 공사장소 주변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켰는가		
	◦ 공사착수전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알리고 협력요청을 하였는가		
	◦ 공사현장밖이라도 작업원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교통안전에 대해 주의시켰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교통안전	◦ 교통관리 계획서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교통통제 시설의 설치상태		
	◦ 도로의 점유 및 사용상태		
	◦ 교통관리 구간의 점검상태		

7. 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NO.1 점검일자 : _____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공사 현장	(1) 작업 환경	◦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 분진·비산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토석, 암석 등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갱내, 옥내의 작업장 등에서 분진측정을 하였는가	
		◦ 통풍설비가 설치되는 갱내 작업장에서의 통풍량, 기온, 탄산가스 등의 측정을 하였는가	
		◦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측정을 하였는가	
	(2) 좁은 공간의 작업	◦ 작업공간이 좁은 곳에서 기계와 인력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가	
		◦ 시공장소나 공간크기에 따른 동작범위·능력을 갖는 기계 등을 선정하였는가	
		◦ 기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될 수 있는 한 기계와 사람의 동시작업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작업방법 및 신호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3) 출입 방지 시설	◦ 공사현장의 주위는 강판, 시트, 또는 가아드펜스 등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구역을 명확히 하였는가	
		◦ 출입방지시설은 관계자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하였는가	
		◦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	
		◦ 도로에 근접하여 굴착등 땅을 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덮개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NO.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인접구조물	◦ 기초 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를 점검하였는가		
	◦ 작업방식,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구조물 하부 및 인접 굴착시 크기, 높이, 하중 및 외력(진동,침하,전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기존 구조물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웰포인트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라우팅, 화학적 고결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비상투입용 보강재를 준비하였는가		
	◦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공사현장	◦ 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상태		
	◦ 현장 출입방지 시설의 상태		
	◦ 현장주변의 계시물 상태		
2.인접구조물	◦ 인접구조물 현황의 파악 상태		
	◦ 피해발생시의 대책		
	◦ 작업방식,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여부와 적정성		
	◦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여부		

8. 해체작업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_____

점검일자 : _____

결				
재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가설공사	◦ 해체시 부딪힐 수 있는 가설전기선에 대해서 절연 방호장치를 확인하였는가		
	◦ 자재의 낙하·비산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하는가		
(2) 흙막이공사	◦ 인접 시설물에 근접해서 타설한 강널말뚝이나 H형강 말뚝을 인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 흙막이 해체작업전 변위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인발장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3) 콘크리트 공사	◦ 장비작업과 인력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 거푸집해체시 표준시방서의 규정대로 존치기간을 확보하였는가		
	◦ 지주의 바꾸어대기를 시행하고 있는가		
	◦ 해체작업시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가		
	◦ 상·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상호간에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		